

##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모집분야 및 인원(명)

모집분야	모집인원	위촉기간	주요 업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7명 이내	위촉일로부터 4년 (연임 불가)	고충민원 조사 및 위원회 안건 심의 등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업무내용

- 금천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 □ 지원자격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함.

## ✓ 결격사유(부패방지권익위법 제15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구민고충처리위원이 위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함

## ✓ 겸직금지(부패방지권익위법 제17조)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모집 일정 및 방법

###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심사)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2차시험 : 면접시험(적격요건 심사, 면접일정 개별통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기본자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
- 구 의회 동의 : 구 의회의 동의 후, 최종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 ※ 구(區)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및 구 홈페이지 게시( '24. 7월 예정)

##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4. 4. 1.(월) ~ 4. 26.(금), 9:00 ~ 18:00(평일)
- 접수장소 : 금천구청 현장구청장실(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
  -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구체적으로 작성, A4용지 2매 이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확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근무기간별 확인필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자격증 및 추천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 기타사항

-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지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전형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
-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음.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금천구의 해석에 따름.

※ 문의 :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 (☎ 02)2627-2244)